

FTA ANALYSIS

FTA TRADE REPORT

FTA 확대를 위한 간편인정 제도 활용방법

김수정 | 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기획실 선임연구원

RCEP 발효에 따른 對일본 수입품목의 '산업별 FTA 활용이익 분석'

오윤진 | 국제원산지정보원 활용연구팀 전문연구원

성다희 | 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기획실 연구원

FTA 확대를 위한 간편인정 제도 활용방법



김수정
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기획실
선임연구원



I. FTA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 개요

FTA를 활용하는 기업에게 난감한 부분 중에 하나는 수출하는 제품 또는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FTA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부분일 것이다.

이러한 서류 중에 하나가 원산지(포괄)확인서인데 동 서류는 FTA에서 특혜를 인정받기 위한 증빙 서류이다. 국내거래에서 어떤 상품이 어디서 생산되었는지 원산지를 증명하는 제도로 물품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는 서류이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공급자나 수출하는 농어민들이 영세한 경우가 대다수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부분이 쉽지 않았고, 이러한 물품의 원산지를 증빙하기 위해 서류준비가 어려웠던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FTA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이다.

내년에는 이러한 FTA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로 추가되는 품목이 있을 예정인데, 하단에서는 FTA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의 개요, 추가되는 품목,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해당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II. FTA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 대상품목

국내의 수많은 수출품목 중 농축수산물의 경우 그 제품의 원산지를 충족함에도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

해당 제도의 목적은 농축수산물 생산자인 농어민 등이 자유무역협정 원산지확인서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 FTA 활용을 통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관세청장이 관련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원산지 확인서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류 하나만으로도 원산지증빙을 인정하는 제도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국내산이라는 것이 증빙이 된다.

이러한 법령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과 제5항에서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12조(원산지확인서)

- ①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이하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이라 한다)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원산지확인서"라 한다)를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②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물품공급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초의 원산지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확인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원산지포괄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산지확인서 및 원산지포괄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④ 관세청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7항에 따른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서류를 제1항에 따른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려면 관련 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으로부터 원산지확인서 또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제공 받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이를 기초로 제10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제14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자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2015년 6월부터 FTA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조금씩 품목이 추가되고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기 앞서 주의할 점은 해당 제도는 생산자가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 및 고시한 서류를 갖춘 경우 이러한 서류를 원산지확인서로

간주하고 있는데 모든 물품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근거를 둔 인증서(예: 등록증, 확인서 등)가 이에 해당한다.

2021년까지 FTA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가 적용되었던 제품은 농산물 1,028개, 수산물 81개, 축산물 5개, 식품류 32개, 지역특산물 47개 품목이다.

[FTA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식품류	지역 특산물
				

예를 들어, 농산물의 경우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서,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등이 있다. 수산물은 물김 수매확인서, 이른 김 수매 확인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서류를 발급받으면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정되기 때문에 서류 한 장 만으로 한국산임을 쉽게 증빙할 수 있다.

축산물은 축산물(소)등급 판정확인서, 축산물(돼지)등급 판정확인서, 축산물(계란, 닭, 오리)등급 판정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FTA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 품목 및 서류]

구분	서류명	발급기관	품목수(개)
농산물	①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②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서(GAP) ③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④지리적표시 등록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028
	⑮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 공급확인서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	
수산물	⑤물김 수매확인서	완도수협 ¹⁾ 등 15개 수협	81
	⑥마른 김 수매확인서	장흥수협	
	⑦수산물 품질인증서 ⑧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증 ⑨수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⑩수산물 유기수산물 인증서(생산자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 ²⁾	⑪축산물(소) 등급판정확인서 ⑫축산물(돼지) 등급판정확인서 ⑬축산물(계란, 닭, 오리) 등급판정확인서	축산물품질평가원	5
식품류	⑭전통식품 품질인증서	한국식품연구원	39
	⑰우수천일염인증서	국립목포대학교 천일염사업단	
	⑱먹는샘물 제조업 허가증 ³⁾	시·도지사	
지역특산품	⑯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서	제주특별자치도청	47

자료: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를 바탕으로 내용 정리

한편, 이번에 FTA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로 추가되는 품목은 총 7개 품목이며, 엿기름, 둥글레차, 고구마 말랭이, 쑥차, 절임배추, 천일염이 내년부터 추가될

예정⁴⁾이다. 관세청에서는 2015년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이러한 품목을 조금씩 확장하고 있다.

1) 16개 수협(강진, 완도소안, 고흥, 의창, 군산, 영흥, 서천서부, 목포, 신안, 해남, 완도금일, 진도, 웅진, 부산, 경기남부, 장흥(마른김에 한함))

2) 국내에서 완전생산되어 도축 및 등급판정 된 축산물에 한정

3) 대상 협정이 한-EFTA FTA, 한-인도 CEPA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4) 다만 해당법안의 제정일정은 입법과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FTA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 추가예상품목 및 원산지증빙서류]

구분		HS 코드	세부품목	원산지증빙서류
1	식품류	1107.10	엿기름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서식 14]
2		1211.90	둥굴레차	
3		0714.20 / 2008.99	고구마 말랭이	
4		1211.90	쑥차	
5		0704.90	절임배추	
6		2501.00	천일염 ⁵⁾	우수천일염인증서 [서식 17]
7		2201.10	먹는샘물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증 [서식 18]

천일염은 소금산업 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우수천일염생산기준에 적합하고, 제39조 제3항 및 제43조 제1항에 따른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을 받은 소금을 말하며, 「우수천일염인증서」가 있는 경우 이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될 것이다.



5) 염전에서 해수를 자연 증발시켜 얻은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인 결정체와 이를 분쇄, 세척, 탈수 또는 건조한 염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식품의 기준 및 규격)

[우수천일염인증서/먹는샘물 제조업 허가증]

[서식 17] 우수천일염인증서

제 호

우수천일염인증서

1. 업 체 명 :

2. 허가번호 :

3. 소 재 지 :

4.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

5. 대표자의 주소 :

6. 품 목 :

7. 유효기간 :

「소금산업 진흥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천일염인증기관의 장 직인

[서식 18]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증

제 호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제조업 허가증

1. 상호:

2.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3. 제조공장 소재지: (전화번호:)

4. 샘물·염지하수의 개발허가기간
가. 샘물 : 000 부터 000 까지
나. 염지하수 : 000 부터 000 까지

5. 제품명

6. 취수정 위치 및 수(개):

7. 취수량도량(m³/일):

8. 허가조건: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 · 도지사 직인

(별첨사항)

연월일	내용	확인

(별첨처분사항)

연월일	내용	확인

먹는샘물의 경우도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증을 제공할 경우 원산지확인서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위에서 언급한 5가지 품목 역시 전통식품 품질인증서를 제출할 경우 원산지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다.

III. 맺음말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21년 10월 사상 최초로 우리나라의 무역액이 1조를 달성하였다. 이번 FTA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의 확장으로 식품류를 수출하는 기업에게는 FTA를 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제도는 농축수산물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영세한 경우가 많아 FTA 활용시 서류제출에 어려움을 겪어

이러한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이다.

따라서 해당 기업들은 매해 개정되는 FTA 원산지 간편인정 제도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FTA 수출 시 필요한 제도의 경우 확인하여 FTA 활용에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동 제도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좀 더 FTA를 유용하게 활용하여 가치창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RCEP 발효에 따른 對일본 수입품목의 ‘산업별 FTA 활용이익 분석’



오윤진
국제원산지정보원
활용연구팀 전문연구원



성다희
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기획실 연구원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하 RCEP)은 아시아 지역의 세계 경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시아 주요국이 대거 참여한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FTA로 RCEP 발효가 내년 2월 1일로 공식 확정됐다.

RCEP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¹⁾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5개국을 더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15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RCEP 발효 시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이 참여하는 거대 경제권이 탄생하게 된다.

첫 협상 당시 인도를 포함한 총 16개 국가가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2019년 인도 측에서 무역 적자 심화 등의 사유로 RCEP 불참을 선언하며 최종적으로 15개국 간 협정이 타결되었다.

RCEP 체결은 한국과 일본 간 처음으로 시장을 상호 개방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전체 관세 철폐 수준은 83%로 양국 간 동일한 수치이다.

한국은 일본에서 수입되는 자동차, 기계 등 주요 민감 품목에 대하여 양허를 제외했으며 개방한 품목에 대하여는 민감성을 고려해 장기철폐 등의 비중을 높게 하여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본 고에서는 RCEP 발효로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FTA 활용이익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 ASEAN 10개국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I. 분석 기준

한국의 對일본 2020년 상위 1,000대 수입품목(전체 수입액 기준 95.4%) 기준, 산업별(MTI²⁾ 1단위) 10대 품목의 현행 실행세율과 RCEP 특혜세율을 비교·분석하였다.

본고에서 비교대상이 되는 실행세율과 RCEP 협정 관세의 적용 순위는 아래와 같다.

RCEP은 2022년 발효 예정이나, 본고는 작성일 (2021년 11월) 기준 적용세율로 작성되었다.

이에 RCEP 시행 1년차 특혜세율과 한국의 현행 실행세율(2021년)을 상호 비교·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주요 수입 관세율 적용 순위]

순위	구분	비고
1	조정관세	가장 우선 적용
2	RCEP 협정관세	이하 순위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
3	WTO 협정관세*	이하 순위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
4	할당관세	이하 순위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 다만 기본관세보다는 우선 적용
5	기본관세	

* 이하 MFN 으로 기재함



2) 산업별·품목별 수출입 분류체계(MTI CODE: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Code)는 산업통상 자원부가 무역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비슷한 종류의 여러 HS코드를 묶어 코드와 품목명을 부여한 체계로서 대분류(MTI 1단위), 중분류(MTI 2단위), 소분류(MTI 3단위), 세분류(MTI 4단위), 세세분류(MTI 6단위)로 품목군을 분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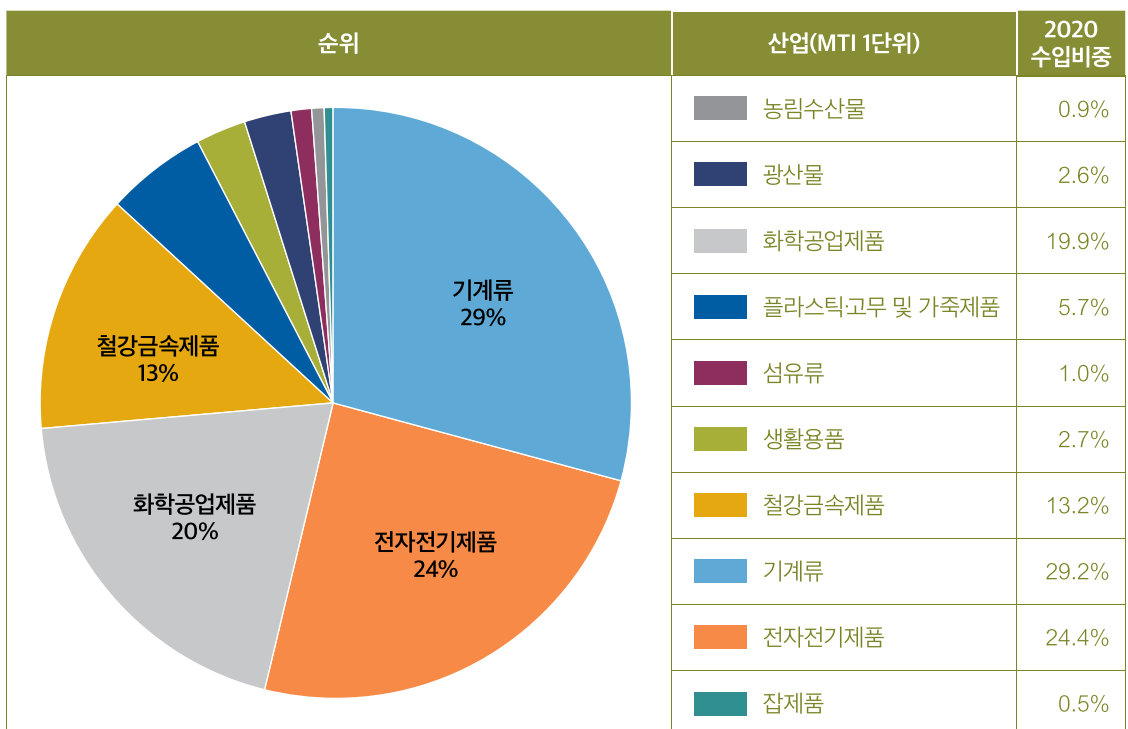


II. 對일본 산업별 상위 수입 품목의 실행세율 vs RCEP

산업별 對일본 2020년 수입금액 비중은 기계류 (29.2%), 전자전기제품(24.4%), 화학공업제품 (19.9%), 철강금속제품(13.2%)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하 각 산업별 10대 품목의 실행세율과 RCEP 특혜 세율에 대하여 비교·분석한 내용에 대하여 후술 한다.

[그림 1] 對일본 2020년 산업별 수입 금액 비중



1. 농림수산물

아래 [표 1]은 농림수산물 산업군의 상위 10대 품목에 대해 보다 상세히 나타낸 것이다.

해당 품목들 중 2개의 품목(고양이 사료, 청주)이 RCEP 발효 시 특혜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며, RCEP 특혜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현 실행세율보다 각각 0.5%, 16.0%의 관세가 절감된다.

특히 HSK 제2206.00-2010호의 청주는 전년대비 수입은 감소했지만 RCEP 적용 시 현 실행세율(MFN

30%) 보다 16% 인하된 특혜관세(14%) 적용이 가능하므로 관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해당품목은 15년 동안 점진적으로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므로 추후 FTA 활용이익이 더 커질 예정이다.

단 농림수산물 분야 품목들은 그 민감성을 고려해 상호 낮은 수준³⁾으로 개방이 이루어졌다.

[표 1] 농림수산물 분야 상위 10대 품목

HSK	품명	비교 세율(%)		적용 세율명	對일 수입금액	
		실행세율	RCEP		2020년 (천\$)	전년대비 증가율(%)
2106909099	기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8	U	기본세율	28,226	-13.1
0307210000	가리비과의 조개[펙텐(Pecten)·클라미스(Chlamys)·프라코펙텐(Placopecten)속의 것으로서 여왕 가리비과 조개를 포함한다]로서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20	U	기본세율	28,019	24.1
0301994090	기타 돔(활어인 것으로 한정한다)	28% 또는 2,052원/kg 양자 중 고액(율)	U	조정관세	24,944	-1.0
2103909090	기타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45	U	조정관세	23,116	-2.9
0301992000	방어(활어인 것으로 한정한다)	10	U	기본세율	22,267	5.8
2309102000	고양이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	5	4.5	RCEP	15,578	19.1
4403251000	삼나무(모든 횡단면의 치수가 15 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0	0.0	기본세율	11,963	26.4
2103909020	인스턴트 카레	45	U	조정관세	11,317	-3.5
2206002010	청주	30	14.0	RCEP	10,271	-25.9
0308901019	기타 우렁쉥이(멍게)로서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20	U	기본세율	8,216	-28.0

3) 품목수 기준 공산품은 91.2%~93.1%, 농·수산물은 (46.2%~47.9%)~(46.9~54.1%)의 양허 비율을 보임

2. 광산물

아래 [표 2]는 광산물 산업군의 상위 10대 품목에 대해 보다 상세히 나타낸 것이다.

해당 품목들 중 8개의 품목이 RCEP 발효 시 특혜 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며, RCEP 특혜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현 실행세율보다 0.2%~7%의 관세 절감이 가능하다.

특히 제71류(진주·귀석·반귀석)의 HSK 제7108.12-9000호, 제7110.29-0000호, 제7110.31-0000호와 제27류(광물성 연료)의 제2710.19-5010호의 경우 RCEP 발효 시 그 세율이 즉시 철폐되므로 FTA 활용이익이 높은 품목이다.

또한 전년대비 수입금액이 큰 폭으로 상승한 HSK 제7112.92-9000와 HSK 제7110.21-0000호의 품목은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므로 추후 FTA 활용이익이 더 커질 예정이다.

다만 HSK 제7110.21-0000호 품목의 규격이 '자동차 매연저감용 촉매 제조용'에 해당하면 1%의 할당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부분에 유의가 필요하며, 할당관세 적용 시 RCEP의 특혜세율(3%)보다 2%의 관세율 혜택을 얻을 수 있다.

[표 2] 광산물 분야 상위 10대 품목

HSK	품명	비교 세율(%)		적용 세율명	對일 수입금액	
		실행세율	RCEP		2020년 (천\$)	전년대비 증가율(%)
7108129000	기타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 화폐용이 아닌 금(백금을 도금한 금을 포함한다)	3	0.0	RCEP	274,744	32.3
7112929000	기타 백금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백금이나 백금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3	2.7	RCEP	133,079	109.3
7110210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팔라듐(palladium)	3	2.7	RCEP	96,623	110.2
		1		할당관세		
2710195010	조유(粗油)	7	0.0	RCEP	92,433	50.4
2710195020	윤활유 기유(基油)	7	U	기본세율	81,135	-8.7
2710121000	자동차 휘발유	3	U	기본세율	63,033	-46.8
2711190000	기타 액화한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5	4.5	RCEP	37,511	-29.9
7110290000	기타 팔라듐(palladium)	3	0.0	RCEP	35,167	35.9
7110310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로듐(rhodium)	1	0.0	RCEP	34,886	384.8
2521001000	석회석	3	2.8	RCEP	34,426	-1.8

3. 화학공업제품

아래 [표 3]은 화학공업제품 산업군의 상위 10대 품목에 대해 보다 상세히 나타낸 것이다.

해당 품목들 중 6개의 품목이 RCEP 발효 시 특혜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며, RCEP 특혜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현 실행세율보다 0.1%~0.8%의 관세 절감이 가능하다.

RCEP 발효 시 활용이익이 있는 6개 품목 중 HSK 제 2902.30-0000호는 20년 동안, 나머지 5개 품목

은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므로 추후 FTA 활용이익이 더 커질 예정이다.

RCEP 발효 시 FTA 활용이익이 없는 나머지 4개의 품목 중 미양허 품목(HSK 3824.99-9090, 3824.99-7100)을 제외한 품목은 현재 실행세율(기본세율, MFN 등) 기준으로 FTA 활용실익이 없는 품목이며, 추후 실행세율 변동 시 FTA 활용이익이 있을 수 있다.

[표 3] 화학공업제품 분야 상위 10대 품목

HSK	품명	비교 세율(%)		적용 세율명	對일 수입금액	
		실행세율	RCEP		2020년 (천\$)	전년대비 증가율(%)
2707300000	크실롤(크실렌)	3	2.7	RCEP	463,498	-44.8
3824999090	기타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 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	0*	U	할당관세	396,332	-6.9
		6.5		MFN		
3707901010	반도체 제조용 포토레지스트	0	5.9	MFN	328,295	22.3
2902500000	스티렌	0	0.0	MFN	207,738	31.1
3004909900	기타의약품	8	7.2	RCEP	206,534	-0.9
7006002000	반도체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용 제7003호·제7004호· 제7005호의 유리	0**	2.7	할당관세	196,029	23.3
		3		RCEP		
3204170000	안료 색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8	7.2	RCEP	186,989	-3.7
3824997100	도금용 조제품	6.5	U	MFN	182,217	7.9
3208909020	바니시(ve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6.5	5.9	RCEP	153,735	6.8
2902300000	톨루엔	3	2.9	RCEP	130,671	-57.5

* 이차전지 제조용의 흑연화합물 또는 전해액

** 규격 제한 없이 당해 연도(~2021.12.31.)까지 0%의 할당관세를 적용

4.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아래 [표 4]는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산업군의 상위 10대 품목에 대해 보다 상세히 나타낸 것이다.

해당 품목들 중 8개의 품목이 RCEP 발효 시 즉시 특혜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며, RCEP 특혜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현 실행세율보다 0.5%~0.6%의 관세 절감이 가능하다.

RCEP 발효 시 즉시 특혜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8개의 품목은 모두 10년에 걸쳐 RCEP 특혜세율이

단계 철폐되는 품목이므로 추후 FTA 활용이익이 더 커질 예정이다.

그 중 HSK 제3921.19-1010호는 할당관세 적용기간 이후 RCEP 특혜세율(4%)과 기본세율(4%)이 동일해진다.

해당품목은 발효 15년차부터 RCEP 특혜세율이 철폐되므로 FTA 활용이익은 발효 15년차부터 존재한다.

[표 4]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분야 상위 10대 품목

HSK	품명	비교 세율(%)		적용 세율명	對일 수입금액	
		실행세율	RCEP		2020년 (천\$)	전년대비 증가율(%)
392062000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	6.5	5.9	RCEP	387,430	18.4
3920999090	기타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	6.5	U	MFN	348,672	-3.7
3920730000	초산셀룰로오스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	6.5	5.9	RCEP	323,181	-13.4
3919900000	기타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	6.5 / 0	U	MFN	290,746	17.3
3921191010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격리막(이차 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4.0	할당관세	213,399	28.6
		4.0		기본세율 = RCEP		
3921909090	기타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	6.5	5.9	RCEP	126,340	23.5
392020000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	6.5	5.9	RCEP	85,354	71.4
4011101000	래디알 구조의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 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신품으로 한정한다)	5	4.5	RCEP	76,198	-7.2
3920690000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	6.5	5.9	RCEP	55,582	15.2
3921193090	기타 아크릴 중합체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	6.5	5.9	RCEP	47,857	26.8

* 규격 제한 없이 당해 연도(~2021.12.31.)까지 0%의 할당관세를 적용

5. 섬유류

아래 [표 5]는 섬유류 산업군의 상위 10대 품목에 대해 보다 상세히 나타낸 것이다.

해당 품목들 중 5개의 품목이 RCEP 발효 시 즉시 특혜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며, RCEP 특혜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현 실행세율보다 0.7%~5.8%의 관세 절감이 가능하다.

RCEP 발효 시 활용이익이 있는 5개 품목은 10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며, 이에 추후 FTA 활용 이익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5개의 품목은 모두 미양허 품목이다.

다만, HSK 제5911.90-0000호의 경우 수입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실행세율이 상이한 품목으로 ‘반도체 웨이퍼 제조에 사용되는 접착성 원형 폴리싱 패드’를 수입하는 경우 0%의 MFN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그 외의 품목’은 13%의 MFN이 적용된다.

따라서 해당품목이 ‘반도체 웨이퍼 제조에 사용되는 접착성 원형 폴리싱 패드의 것’이외의 용도로 수입 되는 경우 RCEP 특혜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표 5] 섬유류 분야 상위 10대 품목

HSK	품명	비교 세율(%)		적용 세율명	對일 수입금액	
		실행세율	RCEP		2020년 (천\$)	전년대비 증가율(%)
7019520000	폭이 30센티미터 초과인 유리섬유와 이들의 제품	8	7.2	RCEP	68,340	18.8
5603930000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을 초과하고 150그램 이하인 기타 부직포	8	U	기본세율	27,145	16.0
5502101000	44,000 데시텍스 미만의 초산셀룰로오스의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 토우(tow)	7.5	6.8	RCEP	19,358	13.1
5402491000	아크릴 중합체의 그 밖의 실	8	U	기본세율	17,730	-36.3
5911900000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	0*	7.2	MFN	14,790	17.7
		13		RCEP		
5603920000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을 초과하고 70그램 이하인 기타 부직포	8	U	기본세율	12,635	-0.5
7019110000	단연사(길이 50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유리섬유와 이들의 제품	8	U	기본세율	12,507	-6.9
6309000000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	8	7.2	RCEP	12,475	-33.5
5603940000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기타 부직포	8	7.2	RCEP	10,535	-21.0
5402191029	기타 나일론 66의 강력사[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으로 한정하며, 텍스처화한(textured) 것인지에 상관없다]	8	U	기본세율	10,113	-15.0

* 반도체 웨이퍼 제조에 사용되는 접착성 원형 폴리싱 패드

6. 생활용품

아래 [표 6]은 생활용품 산업군의 상위 10대 품목에 대해 보다 상세히 나타낸 것이다.

해당 품목들 중 8개의 품목이 RCEP 발효 시 즉시 특혜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며, RCEP 특혜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현 실행세율보다 0.4%~0.8%의 관세 절감이 가능하다.

RCEP 발효 시 활용이익이 있는 8개 품목은 10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며, 이에 추후 FTA 활용 이익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RCEP 발효 시 활용이익이 없는 나머지 2개의 품목 중 HSK 제3926.90-1000호의 경우 발효 1년차에는 RCEP 특혜세율(6.5%)과 MFN(6.5%)이 동일하나, 양허 스케줄에 따라 발효 2년차 이후부터 FTA 활용 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HSK 제9504.90-9090호의 품목은 현재 실행세율(기본세율, MFN 등) 기준으로 FTA 활용이익이 없는 품목으로 추후 실행세율 변동 시 FTA 활용이익이 있을 수 있다.

[표 6] 생활용품 분야 상위 10대 품목

HSK	품명	비교 세율(%)		적용 세율명	對일 수입금액	
		실행세율	RCEP		2020년 (천\$)	전년대비 증가율(%)
9506310000	골프채	8	7.5	RCEP	235,655	13.2
3405400000	조제 연마페이스트(paste)·조제 연마가루와 그 밖의 연마용 조제품	6.5	6.1	RCEP	123,659	13.9
9504909090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오락용구·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	0	0.0	MFN	94,661	89.1
3926909000	기타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	6.5	5.9	RCEP	74,283	-3.8
3926901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계용의 부분품	6.5	6.5	MFN	53,060	21.8
3506109000	기타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6.5	5.9	RCEP	43,462	9.6
3215909000	그 밖의 잉크	6.5	5.9	RCEP	35,212	10.7
3402139000	기타 비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	8	7.6	RCEP	29,137	-13.5
9608100000	볼펜	8	7.2	RCEP	25,856	-6.0
3405909000	그 밖의 광택제와 크림	6.5	5.9	RCEP	24,745	26.2

7. 철강금속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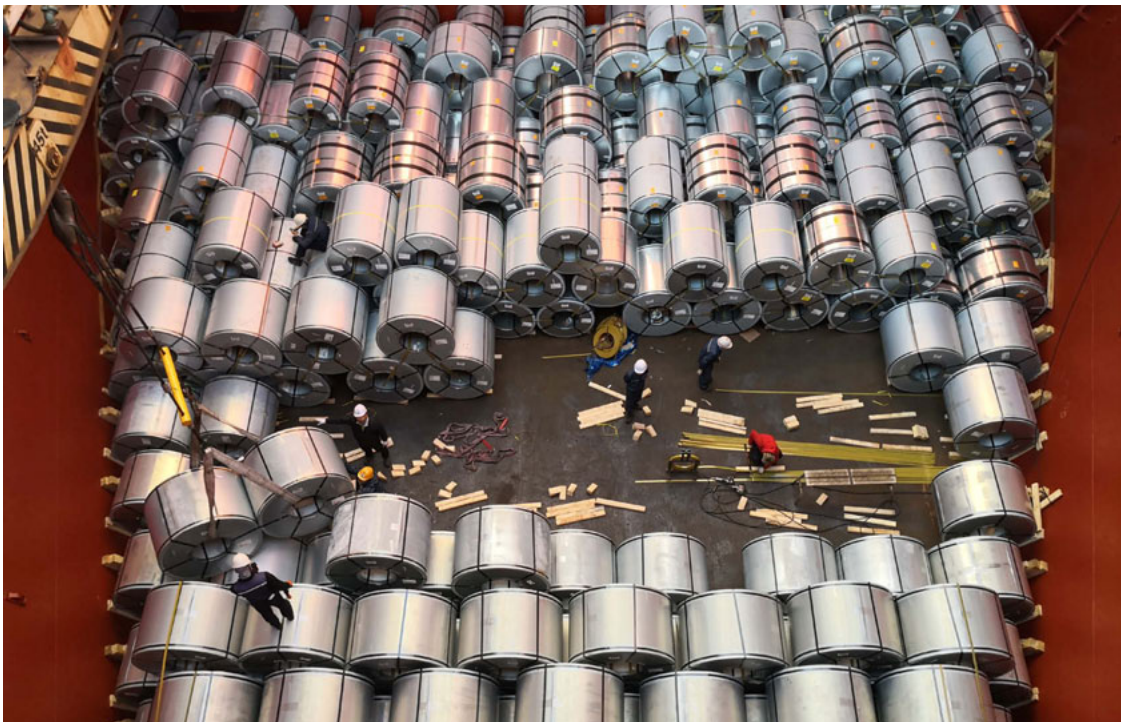
아래 [표 기은 철강금속제품 산업군의 상위 10대 품목에 대해 보다 상세히 나타낸 것이다.

해당 품목들 중 2개의 품목이 RCEP 발효 시 특혜 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며, RCEP 특혜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현 실행세율보다 0.5%의 관세 절감이 가능하다.

HSK 제7410.21-1000호의 경우 15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므로 RCEP 발효 이후 그 세율이 점진적으로 인하되어 추후 FTA 활용 혜택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HSK 제7410.11-0000호의 경우 수입용도 및 그 수량에 따라 적용되는 실행세율이 상이한 품목으로 '이차전지 제조용' 이외의 용도로 수입되거나 '이차전지 제조용으로 연간 3,000 메트릭톤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경우 RCEP 특혜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RCEP 발효 시 FTA 활용이익이 없는 나머지 8개의 품목 중 미양허 품목(HSK 7326.90-9000)을 제외한 품목은 현재 실행세율 기준으로 FTA 활용 실익이 없는 품목으로 추후 실행세율 변동 시 FTA 활용이익이 있을 수 있다.



[표 7] 철강금속제품 분야 상위 10대 품목

HSK	품명	비교 세율(%)		적용 세율명	對일 수입금액	
		실행세율	RCEP		2020년 (천\$)	전년대비 증가율(%)
7204490000	기타 철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0	기본세율	775,248	-40.2
7208399000	기타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0	0.0	MFN	537,941	-21.0
7326909000	기타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물품	8	U	기본세율	517,082	-8.7
7208519000	기타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0	0.0	MFN	315,456	-43.9
7207121000	황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슬래브	0	0.0	기본세율	271,514	1.2
7208389000	기타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열간(熱間) 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0	0.0	MFN	236,602	-27.2
7410211000	인쇄회로판 제조에 적합한 모양인 뒷면을 붙인 구리의 박(箔)[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	7.5	RCEP	158,174	23.7
7602000000	알루미늄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0	기본세율	139,904	2.1
7204210000	스테인리스강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0	0.0	기본세율	128,745	-0.3
7410110000	정제한 구리로 만든 뒷면을 붙이지 않은 구리의 박(箔)[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0*	7.5	할당관세	122,166	10.9
		8		RCEP		

* 이차전지 제조용으로 연간 3,000 메트릭톤 이하

8. 기계류

아래 [표 8]은 기계류 산업군의 상위 10대 품목에 대해 보다 상세히 나타낸 것이다.

기계류의 경우 FTA 활용이익이 높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10대 품목 중 3개 품목(HSK 8703.40-1000, 8708.40-0000, 9001.20-0000)은 미양허 품목이며, 나머지 7개 품목은 RCEP 특혜

세율 대상품목이나 현재 실행세율(기본세율, MFN 등) 기준으로 FTA 활용이익이 없다.

HSK 제8486.30-2000호와 HSK 제8486.20-7000호의 품목은 전년 대비 수입금액이 각각 1,614.8%, 199.9%의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추후 실행세율 변동 시 FTA 활용이익이 있을 수 있다.

[표 8] 기계류 분야 상위 10대 품목

HSK	품명	비교 세율(%)		적용 세율명	對일 수입금액	
		실행세율	RCEP		2020년 (천\$)	전년대비 증가율(%)
8486208410	반도체재료의 건식식각 패턴용의 전기 화학·전자빔·이온빔이나 플라즈마아크 방식에 의한 각종 재료의 가공공작기계	0	0.0	MFN	814,465	69.7
8486204000	반도체웨이퍼 위에 막을 형성하거나 금속을 증착하는 기계	0	0.0	MFN	614,976	93.7
9030820000	반도체웨이퍼나 소자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0	7.2	MFN	447,215	6.3
8486209200	포토리지스트를 도포·현상·경화시키는 기계	0	0.0	MFN	407,698	123.5
8486902010	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0	0.0	MFN	393,924	-7.7
8703401000	신차; 그 밖의 차량	8	U	MFN	368,588	-28.2
8708400000	기어박스과 그 부분품	8	U	기본세율	363,833	-22.5
8486302000	감광성 평판디스플레이용 기판에 회로 모형을 투영하거나 드로잉하는 기기	0	0.0	MFN	362,355	1614.8
9001200000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0	U	MFN	339,840	-30.0
8486207000	반도체웨이퍼를 습식식각, 현상, 스트리핑하거나 세척하는 기계	0	0.0	MFN	311,098	199.9

9. 전자전기제품

아래 [표 9]는 전자전기제품 산업군의 상위 10대 품목에 대해 보다 상세히 나타낸 것이다.

해당 품목들 중 HSK 제8543.70-9090호의 품목이 RCEP 발효 시 특혜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며, RCEP 특혜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현 실행세율보다 0.8%의 관세 절감이 가능하다.

HSK 제8543.70-9090호의 품목 중 ‘주로 어린이용으로 제작된 휴대용 양방향 전자 교육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0%의 MFN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그 이외 품목’은 8%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주로 어린이용으로 제작된 휴대용 양방향 전자 교육 장비’ 외의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7.2%의 RCEP 특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RCEP 발효 시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므로 추후 FTA 활용이익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0개 품목 중 나머지 9개의 품목은 RCEP 특혜세율 대상품목이나 현재 실행세율 기준으로 FTA 활용이익이 없다.

연도⁴⁾가 상이하므로 HS 2012에서 HS 2017로 흡수·통합된 품목의 특혜세율을 통합적으로 고려가 필요하다.

검토 품목 중 HSK 제8542.31-4030호는 HS 2017 개정 시 신설된 품목으로 RCEP 양허표와 HS 기준

◆ 연계세번(예)

2012 관세율표	2017 관세율표
8542.31 84, 85, 90, 93, 95 등	8542.31

[표 9] 전자전기제품 분야 상위 10대 품목

HSK	품명	비교 세율(%)		적용 세율명	對일 수입금액	
		실행세율	RCEP		2020년 (천\$)	전년대비 증가율(%)
8542311000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프로세서와 컨트롤러	0	0.0	MFN	1,393,783	-12.0
8541409030	전하결합소자	0	0.0	MFN	1,076,494	25.6
3818001000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화합원소	0	0.0	MFN	873,729	-2.3
8542314030	제851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	0	확인필요*	MFN	786,881	168.8
8532240000	세라믹 유전체의 고정식 축전기(다층)	0	0.0	MFN	404,430	9.3
9027801000	그 밖의 물리분석용·화학분석용 기기	0	0.0	MFN	291,854	8.4
8534002000	테이프형이나 리드프레임(lead frame) 기능을 하는 회로가 형성된 인쇄회로	0	0.0	기본세율	291,538	3.4
9012101010	일렉트론 빔 현미경	0	0.0	MFN	258,413	107.9
8542391000	기타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	0	0.0	MFN	221,669	-1.0
8543709090	기타 그 밖의 전기기기	0**	7.2	MFN	208,389	-6.9
		8		RCEP		

* HS 2017에 신설된 품목으로 HS 2012 기준 통합된 품목들의 특혜세율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주로 어린이용으로 제작된 휴대용 양방향 전자 교육 장비

4) 한국과 일본 모두 HS 2014를 기준으로 RCEP을 체결

10. 잡제품

아래 [표 10]은 잡제품 산업군의 상위 8대 품목⁵⁾에 대해 보다 상세히 나타낸 것이다.

해당 품목들 중 HSK 제7115.90-1090호의 품목이 RCEP 발효 시 특혜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며, RCEP 특혜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현 실행세율보다 0.8%의 관세 절감이 가능하다.

RCEP 발효 시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관세가 철폐되므로 추후 FTA 활용이익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8개 품목 중 나머지 7개의 품목은 RCEP 특혜세율 대상품목이나 현재 실행세율(기본세율, MFN 등) 기준으로 활용이익이 없는 품목으로 추후 실행세율 변동 시 FTA 활용이익이 있을 수 있다.

[표 10] 잡제품 분야 상위 8대 품목

HSK	품명	비교 세율(%)		적용 세율명	對일 수입금액	
		실행세율	RCEP		2020년 (천\$)	전년대비 증가율(%)
9701101000	회화	0	0.0	기본세율	26,052	-2.3
7115901090	기타 공업용의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그 밖의 제품	8	7.2	RCEP	17,740	58.6
4901999000	기타 인쇄서적·소책자·리플릿(leaflet)과 이와 유사한 인쇄물	0	0.0	기본세율	6,220	-32.3
9703001000	오리지널 조각	0	0.0	기본세율	5,947	83.4
3005109000	기타 접착성 피복재와 접착층을 갖는 그 밖의 물품	0	0.0	MFN	5,757	-27.8
3006401000	치과용 시멘트	0	0.0	MFN	5,648	-1.7
3006402000	치과용 충전제	0	0.0	MFN	5,332	-7.8
3005101000	접착성 피복재와 접착층을 갖는 반창고	0	0.0	MFN	5,161	3.1



5) 對일본 상위 1000대 수입품목 중 MTI 잡제품에 해당하는 품목은 HS CODE 기준 8개임



III. 결론 및 시사점

RCEP의 발효 시 對일 수입품목에 대한 FTA 활용 이익에 대하여 산업별로 살펴보았다.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분석대상 품목 중 즉시 철폐되는 품목보다는 10년 이상 장기 관세 철폐로 양허되는 품목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즉, RCEP 발효에 따라 對일 수입품목에 대한 FTA 활용이익은 점진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RCEP 참여국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과 양자 FTA가 체결되지 않은 국가로서 한국에게 RCEP 체결은 한·일 FTA 체결 효과가 있다는 점과 한·중·일간 경제협정 채널이 형성되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

이에 일본으로부터 물품을 수입 시 RCEP을 잘 활용 해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함이 필요할 것이다.

[對일본 산업별 상위 수입 품목의 실행세율 vs RCEP]

산업분야	RCEP*	실행세율			
		기본	조정	할당	MFN
농림수산물	2	5	3	-	-
광산물	8	2	-	-	-
화학공업제품	6	-	-	-	4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8	-	-	-	2
섬유류	5	5	-	-	-
생활용품	8	-	-	-	2
철강금속제품	2	5	-	-	3
기계류	-	1	-	-	9
전자전기제품	1	1	-	-	8
잡제품	1	3	-	-	4

* 할당관세와 RCEP 특혜관세를 선택 적용 할 수 있는 경우, RCEP 특혜관세 적용대상 품목으로 산정함